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1-13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4나73681 손해배상(기)

원고, 항소인 1. A

2. B

3. C

피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9. 8. 선고 2004가합21775 판결

변 론 종 결 2005. 7. 26.

판 결 선 고 2005. 9. 6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 A에게 100,000,000원, 원고 B, C에게 각 25,000,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5-11-13

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2면 둘째 줄 “제외국민”을 “재외국민”으로 고치고, 네째 줄 “31호증” 다음에 “32 내지 38호증”을, 다섯째 줄 “D” 다음에 “당심 증인 E”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조용호 _____

판사 김환수 _____

판사 김운호 _____